##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82

발의연월일: 2024. 9. 5.

발 의 자:추미애·전재수·이수진

김 현 · 이성윤 · 박홍배

송옥주・황 희・부승찬

이재정 • 노종면 • 이훈기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고, 디지털 성범 죄는 전자 파일 형태로 존재하여 제작되는 순간 무한 복제 가능성이 있어, 피해 영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몰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필요함.

하지만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 중인 피해 영 상물을 발견해도 영장을 발부받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압수하기 어렵 고, 압수영장을 발부받는 동안 피해 영상물은 광범위하게 유포될 수 있음.

또한 가해자의 주소지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토지관할 영장 신청이 기각되어 수사가 지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영상물에 관한 압수 방법으로 파일 원본을 즉각 삭제하고 해당 전자 파일의 사본을 취득하는 방식(일명 '잘

라내기식 압수')을 도입해 피해 영상물 유포를 막을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도 법원의 토지관할 기준지로 인정하 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신설).

### 법률 제 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촬영물 등에 대한 보전명령, 압수)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4조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나 제14조의2의 영상물등,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의 관리·운영자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에게 즉시 게시를 중단하고 원본을 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제 1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의 관리·운영 자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촬영물 등의 사본을 요구하고 원본을 삭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1조의3(관할의 특례) ①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죄에만 해당한다)에 따른 범죄

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수사관서가 수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이나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도 법원의 토지관할 기준지로 본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41조의2(촬영물 등에 대한 보
	전명령, 압수) ① 검사 또는 사
	법경찰관은 제14조에 따른 촬
	영물 또는 복제물이나 제14조
	의2에 따른 영상물등,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이 인터넷 홈페이
	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u>등</u>
	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
	한 경우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의 관
	리・운영자나 「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
	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
	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즉시 게
	시를 중단하고 원본을 보전할
	<u>것을 명할 수 있다.</u>
	② 검사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u>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u>
	하여 제1항에 따른 인터넷 홈
	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

<신 설>

방의 관리·운영자나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촬영물 등의 사본을 요구하고 원본을 삭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1조의4(관할의 특례) ① 제14 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죄에만 해당한다) 에 따른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 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수사관서가 수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이나 법 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과 관 련하여 피해자의 주소, 거소 또 는 현재지도 법원의 토지관할 기준지로 본다.